

제301회 임시회
2011. 6. 23(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6. 23(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11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안 제4조)
-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제출 절차(안 제5조, 제6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안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 윤양한)

-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미
 -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03.7.행안부)
 - 지방재정법 개정('05.8.4.)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근거 조항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05.12.30.)
 - 주민 참여범위 및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06.8.17.)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통보('10.11.1.)
- 조례제정 현황
 - '04. 광주광역시 복구를 시작으로 현재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광역 3, 기초 99) ※ 광역자치단체 : 광주, 대전, 경남

○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절차와 방법, 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향후 추진일정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예산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집행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등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 의회 상임위 소관기관 조정이나 도 조직개편 등 분과위원회 명칭이나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민간위원인 위원들의 소속 분과위원회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6. 16, 장선배 의원
- 수정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의 객관성과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 수정내용
 - 제2조 '주민의 의견제출' 조항 신설
 - 위원회의 기능에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추가
 - 위원수를 60명으로 증원하고 5분의 1 이상을 공모제를 통해 위촉토록 하며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
 - 협의회 및 연구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나누어 6개로 재편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항의 ‘50명’을 ‘60명’으로 하며,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협의회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안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3조 관련)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정책관리실, 행정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센터
문화환경 분 과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여성환경국(여성정책과 제외), 보건환경연구원, 청남대관리사업소
경 제 분 과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경제통상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 ()은 주무과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u>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u></p>
<p><신 설></p>	<p>제2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주민참여 방법) 도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방법과 토론회,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 한다.</p>	<p>제6조(주민참여 방법)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의견 제출 절차)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견 제출 절차)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제8조(결과 공개)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p>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제정안과 같음> 4. <u>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u> 5. <제정안과 같음>
<p>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p> <p>. <u>60명</u></p> <p>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4.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4. <u>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u></p> <p>5.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분과위원회의 지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지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분과위원회별 구성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개별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배정한다.</p> <p>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실국 주무과장이 된다.</p> <p>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4조(회의) <제정안과 같음></p>
<p>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이외의 지역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p>제15조(해촉)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위원에 대한 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정안과 같음></p>
<p>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18조(협의회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2조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3조 관련)		
명 칭	소 관 부 서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정책복지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일반행정 분 과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정책관리실, 행정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행정문화 분 과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예술과)	공보관,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북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센터
산업경제 분 과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문화환경 분 과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여성환경국(여성정책과 제외), 청남대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경 제 분 과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경제통상국, 바이오밸리 추진단
전략산업 분 과	바이오밸리 추진단 (바이오밸리과)	바이오밸리추진단, 미래산업과 사무중 태양광 산업분야, 기업유치지원과 사무중 MRO 산업분야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 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 ()은 주무과

* ()은 주무과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방법) 도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방법과 토론회,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견 제출 절차)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5.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별 구성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배정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실국 주무과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2조 관련)**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정책복지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행정문화 분 과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예술과)	공보관,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북부출장소
산업경제 분 과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전략산업 분 과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과)	바이오밸리추진단, 미래산업과 사무중 태양광산업분야, 기업유치지원과 사무중 MRO산업분야

* ()은 주무과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